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247호
2012년 12월 20일(목)

차 례

【 예 규 】

-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

【 자치법규입법예고 】

-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4

【 고 시 】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 45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완충녹지)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7
- 도시계획시설(학교:경북대학)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9
-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52

【 공 고 】

- 도시계획시설(하천:소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65
- 도로지정공고----- 71
- 도로지정공고[김성수,2012-건축1과-신축허가-52]----- 72
-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73
-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74

뒷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양주시 편집 : 홍보기획과장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2-271호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95호(2012.9.13)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사업과(☎031-590-875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2. 12. 20.

남 양 주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지 구 명	유형	위치	면 적(m ²)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일원	584,827	감) 2,089	582,738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 도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

○ 변경사항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84,827	감) 2,089	582,738	100.0%	
택 지	소 계	286,741	감) 2,089	284,652	48.8%	
	주 거	187,840	감) 2,089	185,751	31.9%	철도부지 제척
	복합용지	55,060	-	55,060	9.4%	
	상 업	35,836	-	35,836	6.1%	
	근생용지	2,839	-	2,839	0.5%	
	종교용지	5,166	-	5,166	0.9%	
기 반 시 설	소 계	298,086	-	298,086	51.2%	
	도 로	97,609	-	97,609	16.8%	
	철 도	33,336	-	33,336	5.7%	
	공 원	62,533	-	62,533	10.7%	주차장(3,525) 중복결정
	주 차 장	(3,525)	-	(3,525)		
	녹 지	14,497	-	14,497	2.5%	
	학 교	81,498	-	81,498	14.0%	
	미래용지	6,313	-	6,313	1.1%	
	커뮤니티센터	2,000	-	2,000	0.3%	
	공공청사	300	-	300	0.1%	

※ 존치지역이 포함된 수치임

2)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세대)			구성비 (%)	인구수(인)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944	(증) 40	6,984	100.0	18,175	(증)104	18,279	100.0	
촉진 구역	소계	6,252	(증) 40	6,292	90.1	16,255	(증)104	16,359	89.5	
	40m ² 이하	1,149	(증) 7	1,156	16.6	2,987	(증) 18	3,005	16.4	
	40~60m ²	1,394	(증)162	1,556	22.3	3,624	(증)421	4,045	22.1	
	60~85m ²	2,463	(감) 52	2,411	34.5	6,404	(감)135	6,269	34.3	
	85m ² 초과	1,246	(감) 77	1,169	16.7	3,240	(감)200	3,040	16.6	
존치관리구역소계		692	-	692	9.9	1,920	-	1,920	10.5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3) 임대주택 건설 등 거주 대책

구 분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 ~ 85㎡	85㎡ 초과	소계	60㎡ 이하	60 ~ 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 ~ 60㎡	60 ~ 85㎡
계	세대 수	기정	6,252	2,543	2,463	1,246	5,127	1,618	2,263	1,246	1,125	606	319	200
		변경	(증) 40	(증) 169	(감) 52	(감) 77	(증) 33	(증) 162	(감) 52	(감) 77	(증) 7	(증) 7	-	-
		변경후	6,292	2,712	2,411	1,169	5,160	1,780	2,211	1,169	1,132	613	319	200
	비율	100.0	43.1	38.3	18.6	82.0	28.3	35.1	18.6	18.0	9.7	5.1	3.2	
주택 재개 발 사업	세대 수	기정	1,057	538	400	119	876	357	400	119	181	115	66	-
		변경	(증) 40	(증) 169	(감) 52	(감) 77	(증) 33	(증) 162	(감) 52	(감) 77	(증) 7	(증) 7	-	-
		변경후	1,097	707	348	42	909	519	348	42	188	122	66	-
	비율	100.0	64.5	31.7	3.8	82.9	47.4	31.7	3.8	17.1	11.1	6.0	-	
도시개발 사업	기정	1,749	734	768	247	1,153	138	768	247	596	402	194	-	
	비율	100.0	42.0	43.9	14.1	65.9	7.9	43.9	14.1	34.1	23.0	11.1	-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3,446	1,271	1,295	880	3,098	1,123	1,095	880	348	89	59	200	
	비율	100.0	36.9	37.6	25.5	89.9	32.6	31.8	25.5	10.1	2.6	1.7	5.8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면적	584,827	감) 2,089	582,738	100.0%	철도부지 제척	
기 반 시 설	소 계	298,086	-	298,086	51.2%	
	도 로	97,609	-	97,609	16.8%	
	철 도	33,336	-	33,336	5.7%	
	공 원	62,533	-	62,533	10.7%	문화공원내 커뮤니티센터 조성(연면적3,000㎡) 소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 (3,525㎡)
	주 차 장	(3,525)	-	(3,525)		
	녹 지	14,497	-	14,497	2.5%	
	학 교	81,498	-	81,498	14.0%	
	미래용지	6,313	-	6,313	1.1%	
	커뮤니티센터	2,000	-	2,000	0.3%	
	공공청사	300	-	300	0.1%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사항 없음

6) 교통계획

○ 변경사항 없음

7) 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8)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사항 없음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사항

가) 촉진구역

구분	구역명	사업방식	면 적(㎡)	사업방식 결정사유
기정	1구역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035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
기정		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5,966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
기정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2,975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20,886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
기정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637	◦국도6호선변 복합용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형성
기정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5,354	◦근린상권 유지를 위한 복합용지 및 주거용지 개발
기정	4구역	도시개발사업	142,457	◦미집행 시설 해소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지 조성
기정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6,676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기정	6구역	6-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4,468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기정		6-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4,917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기정	7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41,044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나) 존치관리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존치1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6-6 일원	6,549	한신아파트
기정	존치2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17-28 일원	10,716	마제스타워 주변지역
기정	존치3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06 일원	85,691	학교밀집지역
기정	존치4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336-27 일원	1,589	빙그레앞 연도형 상가
기정	존치6구역	남양주시 가운동 617-71 일원	1,595	가운연립주택
기정	존치7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85-2 일원	521	철도시설 및 완충녹지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다) 존치시설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존치5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65일원	2,637	부영프라자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584,827	감) 2,089	582,738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478,101	감) 966	477,135	81.8	81.9	
	제1종일반 주거지역	78,653	-	78,653	13.5	13.5	
	제2종일반 주거지역	273,640	감) 966	272,674	46.8	46.8	철도부지 제척
	제3종일반 주거지역	6,549	-	6,549	1.1	1.1	
	준주거지역	119,259	-	119,259	20.4	20.5	
상업지역	소 계	38,486	-	38,486	6.5	6.6	
	일반상업지역	38,486	-	38,486	6.5	6.6	
공업지역	소 계	1,589	-	1,589	0.3	0.3	
	준공업지역	1,589	-	1,589	0.3	0.3	
녹지지역	소 계	66,651	감) 1,123	65,528	11.4	11.2	
	자연녹지지역	66,651	감) 1,123	65,528	11.4	11.2	철도부지 제척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 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1-1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나) 1-2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다) 1-3구역(주택재개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2,975	감) 2,089	20,886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21,486	감) 966	20,520	93.5	98.2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486	감) 966	20,520	93.5	98.2
녹지지역	소 계	1,489	감) 1,123	366	6.5	1.8
	자연녹지지역	1,489	감) 1,123	366	6.5	1.8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라) 2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사항 없음

마) 3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사항 없음

바) 4구역(도시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사) 5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사항 없음

아) 6-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자) 6-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차) 7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사항 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변경)계획

○ 변경사항 없음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건폐율(%)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기정	1구역	1-1구역	주거	16,035	60	200.0	255.0	공동주택
기정		1-2구역	주거	25,966	60	200.0	255.0	공동주택
기정		1-3구역	주거	22,975	60	200.0	255.0	공동주택
변경				20,886	60	210.0	280.0	공동주택
기정	2구역	준주거	5,637	70	350.0	471.0	주상복합	
기정	3구역	주거	65,354	60	200.0	248.0	공동주택	
		상업		80	400.0	480.0	주상복합	
기정	4구역	주거	142,457	60	180.0	200.0	공동주택(임대주택)	
				60	200.0	255.0	공동주택	
기정	5구역	주거	66,676	60	200.0	257.0	공동주택	
		준주거		70	350.0	430.0	주상복합	
기정	6구역	6-1구역	상업	24,468	80	400.0	600.0(750.0)	상업(호텔계획시)
기정		6-2구역	준주거	64,917	70	350.0	455.0	주상복합
			상업		80	400.0	600.0(750.0)	상업(호텔계획시)
기정	7구역	준주거	41,044	70	350.0	450.0	도시계획시설 (환승센터+지원시설)	

주1) 6-1구역 / 6-2구역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지하 연결광장 확보(65%) 및 지상부 리빙루프 설치(20%), 호텔계획시(150%)에 대한 용적률임

주2)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로서, 계획용적률 150% 범위내에서, 최소객실수 80실이상, 용적률 100%이상 확보하여야 함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나) 높이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다) 기타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 변경사항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 변경사항 없음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부담률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 ①	현황국공유지 ②	유상매입시설 ③	존치기반시설	순부담면적(㎡) ①-(②-③)	순부담률(%)	
기정	1구역	1-1구역	16,035	3,061	1,065	-	917	1,996	13.20
기정		1-2구역	25,966	8,764	6,413	-	6,332	2,351	14.94
기정		1-3구역	22,975	6,090	5,074	2,066	2,219	3,082	14.85
변경			20,886	6,097	2,985	802	2,219	3,914	20.97
기정	2구역	5,637	1,971	1,426	300	739	845	17.44	
기정	3구역	65,354	29,850	27,217	1,898	20,636	4,531	10.13	
기정	4구역	142,457	62,196	30,115	742	24,388	32,823	29.15	
기정	5구역	66,676	17,458	13,940	2,619	5,428	6,137	10.02	
기정	6구역	6-1구역	24,468	13,298	10,193	764	8,432	3,869	27.35
기정		6-2구역	64,917	27,743	20,044	2,491	14,119	10,190	21.39
기정	7구역	41,044	41,044	-	-	-	1,509	21.19	

주) 7구역 순부담률 = (기반시설 중 완충녹지 + 파출소) / (민간사유지 + 철도공사 소유 필지)

주) 기반시설 부담면적 중 건축면적 및 공공보행데크 면적은 제외

주)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구역외 사업자 부담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나)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주체

○ 변경사항 없음

14)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특성화계획)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16)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가) 1-1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나) 1-2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다) 1-3구역(주택재개발)

(1)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3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68-6 일원	22,975	감) 2,089	20,886	철도부지 제척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2,975	감) 2,089	20,886	100.0	철도부지 제척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6,097	-	6,097	29.2	
	도로	4,974	-	4,974	23.8	
	공원	1,123	-	1,123	5.4	
택지 (획지)	소계	16,878	감) 2,089	14,789	70.8	
	1-3-a	16,439	감) 2,089	14,350	68.7	공동주택
	1-3-b	439	-	439	2.1	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1-3구역	22,975	-	-	남양주시 도농동 305-1 일원	35	-	-	35	-	
변경	1-3구역	20,886	-	-	남양주시 도농동 305-1 일원	35	-	-	35	-	철도부지 제척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1-3 구역	22,975	20,886	1-3-a	16,439	14,350	남양주시 도농동 305-1 일원	공동주택	60	255	280			
				1-3-b	439	439	남양주시 도농동 265-17 일원	종교용지	60	230	23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구분	합계	분양 (㎡)					임대 (㎡)				
					소계	40 이하	60 이하	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60 이하	85 이하	85 초과
			세대수	409	339	-	118	144	77	70	70	-	-	-
			변경	(증) 40	(증) 33	-	(증) 162	(감) 52	(감) 77	(증) 7	(증) 7	-	-	-
변경후	449	372	-	280	92	-	77	77	-	-	-			
비율 (%)	100.0	82.9	-	62.4	20.5	-	17.1	17.1	-	-	-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주거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1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지금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위치변경 · 변경 전 : 도농동 260-8수 일원 · 변경 후 : 도농동 265-27 일원	국공유지 철도부지 제척으로 인한 공동주택 용지내 위치 변경
용적률(공동주택) · 변경 전 : 255% · 변경 후 : 280%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12.6.15.)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업시행시 건축법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설치함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시행자	131	(증) 40	171	-	시행시기는 주변구역 추진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도농동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소공원	변경 전	도농동 260-8 일원	1,123	-	1,123	-	위치 이동	
				변경 후	도농동 265-27 일원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소공원	위치변경 · 변경 전 : 도농동 260-8수 일원 · 변경 후 : 도농동 265-27 일원	국공유지 철도부지 제척으로 인한 공동주택 용지내 위치변경

라) 2구역(도시환경정비)

(1)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변경)조서

마) 3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사항 없음

바) 4구역(도시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사) 5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사항 없음

아) 6-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자) 6-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일원	584,827	감) 2,089	582,738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 도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584,827	감) 2,089	582,738	100.0	100.0	
주거지역	소계	478,101	감) 966	477,135	81.8	81.9	
	제1종일반 주거지역	78,653	-	78,653	13.5	13.5	
	제2종일반 주거지역	273,640	감) 966	272,674	46.8	46.8	철도부지 제척
	제3종일반 주거지역	6,549	-	6,549	1.1	1.1	
	준주거지역	119,259	-	119,259	20.4	20.5	
상업지역	소계	38,486	-	38,486	6.5	6.6	
	일반상업지역	38,486	-	38,486	6.5	6.6	
공업지역	소계	1,589	-	1,589	0.3	0.3	
	준공업지역	1,589	-	1,589	0.3	0.3	
녹지지역	소계	66,651	감) 1,123	65,528	11.4	11.2	
	자연녹지지역	66,651	감) 1,123	65,528	11.4	11.2	철도부지 제척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도로

○ 변경사항 없음

(2)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3) 철 도

○ 변경사항 없음

(4) 녹 지

○ 변경사항 없음

(5)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도농동 산11임 일원	30,370	경고243호 (‘95.6.30.)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도농동 306-34대 일원	1,659	-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도농동 28-8대 일원	1,514	-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지금동 528-3대 일원	3,926	-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도농동 73-1대 일원	2,656	-	
기정	126	공원	소공원	도농동 1-16대 일원	1,087	남양주136호 (‘10.6.29.)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도농동 53-17대 일원	4,446	남양주136호 (‘10.6.29.)	커뮤니티 센터포함
기정	1	공원	소공원	도농동 323-5장 일원	375	-	
기정	2	공원	소공원	도농동 336-26대 일원	1,231	-	
기정	3	공원	소공원	도농동 260-8수 일원	1,123	-	
변경				도농동 265-27 일원	1,123	-	
기정	4	공원	소공원	도농동 34-4대 일원	1,096	-	
기정	5	공원	소공원	가운동 619-20대 일원	3,163	-	
기정	6	공원	소공원	가운동 617-8대 일원	4,826	-	
기정	7	공원	소공원	도농동 111-6대 일원	4,054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소공원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도농동 260-8수 일원 · 변경 후 : 도농동 265-27 일원 	국공유지 철도부지 제척으로 인한 공동주택 용지내 위치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247호

- (6) 공공공지
 - 변경사항 없음
- (7) 공공청사
 - 변경사항 없음
- (8) 학교
 - 변경사항 없음
- (9) 문화시설
 - 변경사항 없음